

입법예고 중법령명	신도기본교육시행령 개정안		
담 당	포교원 포교부 신도팀 (02-2011-1896)	입법예고일	2025년 2월10일 ~ 3월 1일

1. 이유 및 취지

○ 중앙중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신도기본교육 관장 부서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교재 인증 및 교육기관 관장 부서 변경함(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 개정).

나. 유명무실화된 신도품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(제11조).

3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신도법 제11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신도기본교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영은 신도법에 의하여 신도기본교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5조(교육자) 신도기본교육의 교육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 1. 사찰 주지 및 소임자 2. 구축계를 수지한 승려 3. 교법사, 전문포교사 등 중단의 자격 품수자 4. 중단의 지도자 교육을 받은 자 5. 불교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6. 삭제 <불기 2555(2011).07.05>	제5조(교육자) 신도기본교육의 교육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교법사, 포교사 등 중단의 자격 품수자 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교육교재) 신도기본교육의 교재는 포교원회의 승인을 거쳐 포교원장이 지정한 책자 또는 포교원에서 검인한 책자로 한다.	제6조(교육교재) 신도기본교육의 교재는 포교부에 서 지정 또는 검인한 책자로 한다.
제8조(교육기관 및 교육기관의 의무) ①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기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 1. 본중 산하 사찰 2. 포교원에 신고된 본중 산하 사찰의 연합교육기관	제8조(교육기관 및 교육기관의 의무) ①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기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중단 에 신고된 본중 산하 사찰의 연합교육기관

현행	개정안
<p>3. 포교원장이 인가한 전문교육기관</p> <p>② 기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단의 중헌·중범·중령을 준수할 의무 2. 운영 보고의 의무 3. 학사관리 지침 준수의 의무 4. 기타 중단 인가기관의 의무 	<p>3. 중단이 인가한 전문교육기관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교육기관 신고) ① 조계중 등록 사찰의 교육기관 인가는 기본교육시행 현황을 포교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한다.</p> <p>②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찰연합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'사찰연합 신도기본교육기관 신고서'를 포교원에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기본교육에 관한 인가 사항은 포교원회의에서 정한다.</p>	<p>제9조(교육기관 신고) ① 조계중 등록 사찰의 신도 교육기관 인가는 기본교육시행 현황을 포교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한다.</p> <p>②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찰연합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'사찰연합 신도기본교육기관 신고서'를 포교부에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기본교육에 관한 인가 사항은 포교부에서 정한다.</p>
<p>제10조(교육현황 보고) ① 신도기본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7조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종료와 함께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'신도기본교육 현황 보고서'를 작성하여 관할 교구본사 포교국을 경유하여 포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수자 명단 2. 교육자(강사) 명단 3. 교육 일정표 4. 기타 필요한 사항 <p>② 삭제 <불기 2555(2011).07.05></p> <p>③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찰의 주지는 주지임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④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8조 제1항의 제2호, 제3호의 신도기본교육기관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교육현황 보고) ① 신도기본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7조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종료와 함께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'신도기본교육 현황 보고서'를 작성하여 관할 교구본사 포교국을 경유하여 포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교육 이수증 및 신도품계 수여) ① 신도기본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재적사찰 주지스님 명의의 신도기본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포교원은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품계회장을 교부하며 교육기관장은 교육이수자에게 신도품계를 품서한다.</p>	<p>제11조(교육 이수증 수여) 신도기본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재적사찰 주지스님 명의의 신도기본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항 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지도감독) ① 포교원장은 신도기본교육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포교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교구본사 포교국에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구본사 포교국장은 지도감독 결과를 포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지도감독) ① 포교부장은 신도기본교육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.</p> <p>② 포교부장은 제1항의 권한을 교구본사 포교국에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구본사 포교국장은 지도감독 결과를 포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13조(운영내규)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교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교원장이 정한다.</p>	<p>제13조 <조 삭제>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<불기2569(2025).00.00 개정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